

1. 개정이유

임대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인 기준 중위소득(1.1), 주거급여 고시일(1.1),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시세 결정일(4.1.) 등이 달라 계약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하여 일원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임대시세의 결정일 변경(안 제2조제5항 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고시 제 호

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
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

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 중 “4월1일”을 “1월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임대시세의 결정) ①~④ (생략) ⑤사업시행자는 최초 입주지정기 간 이후 매년 <u>4월 1일</u> 을 기준으로 임대시세를 갱신하여야 한다.	제2조(임대시세의 결정) ①~④ (생략) ⑤----- ----- <u>1월 1일</u> ----- -----.